

금호제1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229호(2007.07.12.)로 금호제16구역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되고, 2008.04.21. 조합설립인가, 성동구고시 제2009-65호(2009.12.17.)로 사업시행인가, 성동구고시 제2012-102호(2012.09.20.)로 사업시행(변경)인가되고, 성동구고시 제2021-9호(2021.01.14.)로 정비계획(변경)고시되고, 성동구고시 제2021-227호(2021.12.23.)로 사업시행(변경)인가, 제2023-21호(2023.02.23.)로 사업시행(변경)인가 (정정)고시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501-31번지 일대 금호제1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법 제5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2023년 10월 19일

성 동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: 재개발정비사업

나. 명 칭: 금호제16구역 재개발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: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501-31번지 일대

나. 면 적: 27,485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: 금호제1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신화철)

나. 주 소: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산길 62, 2층(금호동2가)
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: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일로부터 2023.10.22.까지

5.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일: 2023년 10월 19일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: 붙임(변경)

7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
8. 변경의 사유 및 내용

가. 사업시행기간 변경

구분	사업시행기간 변경내역	비고
기정	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일로부터 72개월	
변경	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일로부터 2023.10.22.까지	

나. 정비사업비 변경

- (기정) 244,810,433,015원→(변경) 323,462,024,203원

다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변경

9.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주거정비과(☎ 02-2286-6571)와 금호제16구역 주택
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 02-2254-1131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서 1부.